

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57
----------	----

제안년월일 : 2018.12.04.

제안자 : 재정건설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지난 2018년 11월 13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상정·심사함
- 구청장 제출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김정우위원외 2명이 ‘현행 조례의 일반회계로의 전출근거는 특별회계 본연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조례 제4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삭제’하고 기타 내용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하는 「대안」을 발의함
- 「구청장 제출 개정안」과 「김정우의원 대표발의 대안」을 일괄 심사한 결과, 「대안」을 가결하고 「구청장 제출 개정안」을 폐기한 후 「대안」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

2. 주요내용

가.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 신설(안 제7조)

나. 조례의 근거법령 정비(안 제3조)

다. 일반회계로의 전출 근거 삭제(현행 제4조제1항제9호, 현행 제4조제2항)

라. 용어순화 및 기타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(안 제1조~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주차장법」 제21조의2(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)
- 2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(회계의 구분)제3항 및 제4항
- 3) 「지방재정법」 부칙 제4조(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)제2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주차장특별회계”를 “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”로 한다.

제3조제3호 중 “서초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하고,

같은 조 제6호 중 “「도로교통법」 제161조제3호”를 “「도로교통법」 제1

61조제1항제3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법 제19조 제5항”을 “법 제1

9조제5항”으로 붙여 쓰고, 같은 조 제8호 중 “법 제24조에 따른 과징금”을

“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”이라 하고,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

하고, 같은 조 제11호 중 “이행강제금”을 “이행강제금의 징수금”으로 하며,

같은 조 제12호 중 “그 밖의 잡수입”을 “그 외 수입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7조를 제8조로 하고, 제8조의 “의한다.”를 “따른다.”로 하며 제7조를 다
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존속기한)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, 「지방
재정법」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8조를 제9조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(대 안)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주차장법」 제21조의2에 따라 <u>주차장특별회계</u>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<u>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</u> ----- -----.</p>
<p>제3조(세입)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.</p> <p>1.~2. (생략)</p> <p>3.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<u>서초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</u></p> <p>4.~5. (생략)</p> <p>6. 「도로교통법」 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</p> <p>7. (생략)</p> <p>8. <u>법 제24조에 따른 과징금</u></p> <p>9. (생략)</p> <p>10. 「<u>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</u>」 제20조에 따른 <u>주차목적 도로점용료</u></p>	<p>제3조(세입) ----- -----.</p> <p>1.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구청장</u>----- -----</p> <p>4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「<u>도로교통법</u>」 제161조제1항제3호 -----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</u></p> <p>9. (현행과 같음)</p> <p>〈삭제〉</p>

11.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

12. 그 밖의 잡수입

제4조(세출) ① (생략)

1.~8. (생략)

9. 구 재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. 다만, 제3조제1호, 제3호, 제5호, 제7호부터 제11호 까지 규정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.

② 제1항제9호의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구의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.

〈신 설〉

제7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.

제8조 (생략)

11. -----이행강제금의 징수금

12. 그 외 수입

제4조(세출) ① (현행과 같음)

1.~8. (현행과 같음)

〈삭 제〉

〈삭 제〉

제7조(준속기한)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,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8조(준용) -----

----- 따른다.

제9조 (현행 제8조와 같음)